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4월 25일(목) 11:00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) 이후 사용		
비고	# 브리핑 : 4.24(수) 11:00, 정부서울청사, 규제조정실장 ※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,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 * 공동배포 : 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벤처부, 금융위	
총괄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	팀장 임홍기, 서기관 한레지나 (044-200-2446, 2415)
정보통신 융합법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	과장 이진수, 사무관 조경래 (02-2110-2830, 2821)
산업융합 촉진법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	과장 김대자, 사무관 박용균 (044-203-4510, 4515)
지역특구법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과장 성녹영, 사무관 이범선 (042-481-1695, 1609)
금융혁신법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, 규제샌드박스팀	과장 송현도, 사무관 서승리 (02-2100-2530, 2536) 팀장 정선인, 사무관 이소민 (02-2100-2841, 2844)

「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」
혁신의 현장에 힘을 [+] 더하겠습니다.

-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,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-

- **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·신기술 규제**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,「**규제 관계차관회의**」등에서 **신속**하게 **정비**
- **동일·유사 신청사례**는 **절차**를 **간소화**하고 **신속**하게 **처리**
-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**분기별 사후 점검체계**를 **가동**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**즉시 규제정비**를 통해 **시장출시 지원**

□ **이낙연 국무총리**는 4월 25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**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를 주재하고,

○ 지난 **1.17일 정보통신·산업융합 분야** 첫 **시행 후 100일**을 맞이하여, 그간의 **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**를 논의했습니다.

1. 시행 100일의 의미

□ **4월 26일**이면 **정보통신 융합 분야**와 **산업융합 분야** 등 두 분야가 **첫 시행**(1.17일)한 후 **100일**을 맞이합니다.

○ **시행 한 달 내 첫 승인**을 시작으로 **현재까지 26건**의 **승인**이 **완료**되었으며, **5월초**까지 **20여건**을 신속하게 **심사**할 예정입니다.

* 지역혁신 분야는 시·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

□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, 규제 샌드박스가 **규제 혁신**을 위한 **전기**(轉機) **마련**과 **분위기 조성**에 **기여**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**국회 앞 마당**에 **규제 샌드박스 1호** 과제인 **수소충전소** 설치를 허용한 **국회의 적극적인 협조**와,

○ **기업들의** 뜨거운 **관심**과 **참여**, 그리고 **정부의 강한 의지** 등이 **삼위일체**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**성공적으로 안착**하였습니다.

□ 다만, 규제 샌드박스는 **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**인 만큼, **일부 개선·보완**이 **필요**하다는 **의견**도 **꾸준히 제기**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**다양한 채널**을 통해 **의견**을 **수렴**하였습니다.

○ **업계**와 **관련 협회**, 과제 **신청·접수 전담기관** 등 **정책 현장의 목소리**❶ 뿐만 아니라, **국회**와 **전문가**❷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.

❶ 전담기관 면담(2.15, 4.4), 협회 간담회(4.12), 관계 차관회의(3.5) 등
❷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(2.20),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(4.3), 민간 전문가 간담회(3.28)

□ **시행 초기 단계**에서부터 **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**하여 **제도의 완성도**를 **높여** 나가는 것이 **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**라는 인식 하에,

○ **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**을, 그간의 **성과**는 **더욱 확산**하고 일부 **보완이 필요**한 부분은 **조기에 정비**할 수 있는 **계기**로 삼았습니다.

2. 시행 100일의 성과

1 **세계**에서 **가장 완성**된 「**한국형 규제 샌드박스**」가 창출되었습니다.

○ **외국**은 **실증 테스트 중심**인데 반해 **우리는** 규제 **신속확인, 임시허가, 실증특례** 등 규제혁신을 위한 **3종 세트**를 완비했습니다.

* 영국은 신속확인, 일본은 신속확인·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

○ **금융분야 중심**의 **외국**에 비해 **ICT·산업융합·지역혁신** 등 **산업 전반을 포괄**하여 **가장 광범위**하게 시행 중입니다.

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

한국		외국
신속확인		해당 없음
임시허가	VS	해당 없음
실증특례		실증특례

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

국가	도입 범위
	·**실물경제 포함**하는 **4대 분야**
	·**금융 중심**, 최근 에너지 분야 확대
	·**금융 중심**, 최근 에너지 분야 검토
	·'18년 **실물경제 제한적 도입**(4건)

2 외국과 비교 시 **가장 짧은 기간**에 **최다 적용 사례**를 창출했습니다.

○ 우리의 **심사기간**은 **외국**(통상 6개월 소요)에 비해 **절반수준**입니다.

○ 우리의 **승인 규모**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**영국**(年 40여건)에 비해 **2배가 넘습니다.**

한국과 주요국 심사 기간·승인 규모 비교

국가	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
	·**2~3개월**, **금년 중 100여건** 이상
	·통상 **6개월**, **年 40여건** 승인
	·'16년 도입 후 승인 **6건**
	·통상 **6개월**, '18년 후 승인 **4건**

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

승인건수	실적	5월초	6월
ICT 융합	8	4 (5월초)	5 내외
산업 융합	9	7 (4.29)	5 내외
금융 혁신	9	10 (5.2)	86 (심사)
지역 혁신	7월말부터 특구계획 심사		

3 오랜 기간 **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**가 **마련**되었습니다.

❶ **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**에서 보듯이 **덩어리 규제로 지연**되던 과제들이 **규제 일괄 유예·면제**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.

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(2.11일 승인)

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	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
■ **덩어리 규제** → 규제 개선 **논의 지연** ▸ 용도지역 규제(국토계획법·서울시 조례) ▸ 도시계획시설 규제(국토계획법) ▸ 공유재산임대 제한(공유재산법 등)	■ **관련 규제 유예·면제** → **우선 허용** ▸ 3곳 실증특례, 1곳 조건부 특례 부여 ■ 실증 결과 바탕으로 **신속한 규제정비** 추진

❷ **이해충돌로 교착상태**에 있던 DTC **유전체 분석**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**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**에 대해 **실증테스트**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(2.11일 승인)

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	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
■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**역할 차별화** 논리로 **신기술 도입의 답보** 상태 지속 ▸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**질환 외 웰니스 항목 중심** 12가지로 제한(생명윤리법) ▸ 미·일·영 등 **주요국 보다 제한적** 운영	■ **13개 질환**에 대해 **실증 허용** ▸ 만성질환, 호발암, 노인성질환 등 포함 ■ **질병예측·건강관리 서비스 제공** 가능 ▸ 맞춤 식품,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**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·확대** 기대

❸ **부작용 우려**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**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**도 **시장에서 점검·보완**할 수 있는 **기회가 확보**되었습니다.

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(4.17일 승인)

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	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
■ **불법 현금융통**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**답보**(여신전문금융업법) ■ **계좌기반** 개인간 **송금서비스만 존재** → 지불·결제 **현실과 괴리*** *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·결제 수단	■ **부작용 최소화 조건*** 하에서 과감히 **허용** * 한도 설정,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■ 지불·결제 **편의성 획기적 제고** 기대 ▸ **계좌잔액 없이도** 일정한도 송금 **가능** ▸ **경조사·중고거래**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

4 아울러, 제도 운영과정에서 **긍정적인 파급효과**도 유발되었습니다.

❶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**유연하게 법령을 해석**하는 등 **적극행정의 분위기**가 **조성**되었습니다.

적극 행정 주요 사례

유연한 법령해석	▸ 약사법 해석에 따라 **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**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**허용토록 개선**(명확하게 공지) *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▸ **한전**이 전력·에너지 신산업 분야 **중소기업 상품·서비스 중계**가 **가능**하도록 **한국전력공사법**을 유연하게 **해석**
정책 권고	▸ **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** 의료용 **산소공급장치**를 **의약품·의료기기 복합 품목**으로 **신청**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

❷ **기업·소비자·정부 모두**에게 **이익**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.

- **기업**은 **산업간 융·복합**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.

 * **금융·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**(4.17) :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

- **소비자**는 신제품·서비스 조기 출시로 **편리성이 향상**되었습니다.

 * **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**(2.14) :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

- **정부**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**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**를 확보하였습니다.

 * **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**(2.14) :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·평가

❸ **규제혁신**을 위한 **제도적 장치**도 동시에 **완비**되었습니다.

- **적극행정·정부 입증책임제·포괄적 네거티브 전환** 등 유기적 연계·운영이 가능한 **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**이 마련되었으며,

- 이를 통해, **규제정비 방식**, **사후관리** 및 **입법방식**, **관련 공무원의 자세** 등 全 과정에서 **과거와 차별화**된 규제혁신 **시스템**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

5 **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**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,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**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**하고 있습니다.

① A 기업

▸ "태국, 베트남, 인도 등 **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** 국내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로 **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**"

▸ "**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**할 수 있게 되었고, **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**할 수 있어"

▸ "**규제 샌드박스를 계기**로 관련 규제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**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**"

② B 기업

▸ "**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사업 활동과정에서 지난 2년간** 수주한 실적이 **40건에 불과**했던 것이 **단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**"

▸ "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**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**"

③ C 기업

▸ "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**글로벌 기업보다 앞서서 2015년에 기술을 개발**했으나 **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** 인증을 받지 못해 **출시가 곤란**"

▸ "**규제 샌드박스를 통해**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**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**될 것으로 기대"

④ D 기업

▸ "제품개발 후 규제에 가로막혀 **규제완화를 위한 각종회의에 참석**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, **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어"**

▸ "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**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**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, 관심있는 **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 진행** 중"

3.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

중점 개선 사항

□ 규제 샌드박스의 **궁극적 목적**이 규제로 가로막힌 **신기술**의 **신속한 시장출시**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**개선방향**을 설정하였습니다.

○ 이를 위해, **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·신기술 규제**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**「규제 관계차관회의」** 등에서 **신속하게 정비**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,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**분기별 사후 점검체계**를 **가동**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**즉시 규제정비를** 통해 **시장출시**를 **지원**하겠습니다.

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

(1) 신청·접수 단계

❶ **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**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**전담 지원기능**을 **대폭 보강**하겠습니다.

- 금번 추경예산에서 **재원 확보**를 통해 **법률 자문, 신청서 작성 지원** 등을 강화하고, 5월까지 **4개 분야 부처** 및 **전담지원 기관 조직**과 **인력**을 **확충**하여 **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**하겠습니다.

❷ 신청과제 **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**를 **구축**하겠습니다.

- **규제 샌드박스**는 다른 **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**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.

- **신산업·신기술과 무관**한 규제의 경우에는 **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**하여 **반드시 처리**하고 신청자에게 **회신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**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·신기술 규제**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**별도 정비체계***에서 **신속하게 정비**하겠습니다.

*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+ 국무조정실장 주재「규제 관계차관회의」

(2) 과제 심사 단계

❶ **부가 조건**을 **최소화**하고 **수시 정비 체계**를 **도입**하겠습니다.

- **해당 규제부처**에 **조건 부가 필요성, 해외 사례** 등 **입증책임**을 **부여**하고,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.

- 또한, **전문 분과위원회**에서 **부가 조건의 적절성**을 **수시로 점검**해서 필요한 경우 **완화**하겠습니다.

❷ **동일·유사 신청사례**에 대해서는 **절차를 간소화**하여 **신속하게 처리**하겠습니다.

- **신청기업**과 **제품·서비스 유형**에 따라 **핵심 고려 요소*** 중 **일부**는 관계부처 **협의** 및 **심의**를 **생략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* 협의·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: △관련 규제, △기업 역량, △추가·변경 사항 등

핵심 고려요소별 협의·심의 여부

구분	관련규제	기업역량	추가·변경사항	예시
동일기업 & 동일제품·서비스	×	×	○	▸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(2.11일 서울 내 4곳, 실증특례 승인)
타 기업 & 동일제품·서비스	×	○	×	▸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(마크로젠,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)
동일기업 & 유사제품·서비스	△ (일부 제외)	×	○	▸마크로젠, DTC 13개 항목 외 추가

(3) 사후 관리 단계

❶ **분기별**로 **실증특례**를 **점검**하고, **실증특례 기간**(2+2년) **중**이라도 **규제를 신속하게 정비**하여 **조속한 시장출시**를 지원하겠습니다.

- 이를 위해,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**분기별「실증특례 점검보고서」**를 작성하고, **「규제 관계차관회의**(국무조정실장 주재)」에서 **심사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❷ **실증특례와 병행**해서 **신규 기술기준 마련** 작업이 이루어져 **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**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.

- 실증특례 기간 중 **기술 전문기관**(예: 국가기술표준원)을 통해 세부적인 **기술기준 마련**을 **지원**하겠습니다.

❸ 아울러, **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**들에게 규제특례 외 **R&D 지원** 등 **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**하겠습니다.

4. 향후 운영 중점 방향

□ 규제 샌드박스가 '**살아 숨 쉬는 제도**'가 될 수 있도록 **세 가지 측면**(3C)에 **역점**을 두겠습니다.

❶ 우선,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**전향적 사고**로 **시스템의 변화**(Change)를 추구하고,

❷ **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**을 위해 **실행**(Carry-out)에 **모든 역량**을 **집중**하며,

❸ **현장과 적극적인 소통**(Communication)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, **열린 자세**로 제도를 **지속 점검·보완**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**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**될 수 있도록 **한층 노력을 강화**하겠습니다.

<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>

일시	안건명(잠정)
1 차 (4.11)	**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**
2 차 (4.18)	**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**
3 차 (4.25)	**규제 샌드박스 100일,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**
4 차 (5월)	**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**

※ (붙임)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

※ (별첨) 「규제 샌드박스 100일」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)

붙 임 **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**

1. 4개 부처로 나눠서 접수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성 강화 취지

□ **기업**은 **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·문의**❶할 수 있으며, 이후 **분야별 자세한 안내**❷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

❶ ICT융합(과기부), 산업융합(산업부), 금융혁신(금융위), 지역혁신(시·도, 중기부)
❷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

□ 다만, **법률 자문·컨설팅, 체계적인 사후관리**를 위해서는 **분야별 전문성**이 **중요**하므로 **4대 분야로 구분·접수**

2.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조실을 컨트롤 타워로 협업체계 완비

□ **국무조정실 총괄** 하에 **4법 주관부처**와 **규제 부처**간 **역할**을 **분담**

○ **(국무조정실)** 규제 샌드박스 **제도 총괄**

* 규제 관계차관회의(국조실장 주재),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(규제조정실장 주재)

○ **(4법 주관부처) 분야별 4개 부처**(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, 금융위)가 **규제 샌드박스 운영**, 해당 **규제부처와 공동**으로 **사후관리·평가**

○ **(규제 부처) 규제 특례 협의, 사후 관리** 및 **규제 정비 추진**

*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·집행하는 부처

3.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 과제별로 전문가 등이 심사하는 제도

□ **규제특례**는 신청에 기반한 **예외적 조치**로서 건별로 **면밀한 심사** 필요

○ **영국·일본** 등 주요 선진국도 **건별 심사체계**이며, **한국**의 규제 샌드박스가 **훨씬 신속하게 심사·적용 중**(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)

❶ (영국)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/ 年 140여건 접수, 45건 내외 승인
❷ (일본) '18.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·승인

□ 특히, **사후에 규제가 정비**될 경우 **업계·산업 전반이 혜택**을 향유

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

공개

「규제 샌드박스 100일」

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

2019. 4. 25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 개요 ····· 1

(참고 1)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····· 2

Ⅱ. 시행 100일의 성과 ····· 3

Ⅲ.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과제 ····· 7

1. 현장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 ····· 7

2.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····· 8

3.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 ····· 11

(참고 2) 26개 승인과제 개요 ····· 12

Ⅰ. 추진 개요

1 시행 100일의 의미

□ 1.17일 **ICT**와 **산업융합 분야** 첫 시행 후 **4.26일 100일** 도래

○ **금융혁신**(4.1)·**지역혁신**(4.17) 분야는 이제 막 **시작 단계**

□ 시행 초기의 **성과는 더욱 확산**하고, 일부 **보완이 필요한 부분**은 **조기에 정비**할 수 있는 계기로서 100일의 의미

⇒ **전례가 없는** 혁신적 **제도임을 감안, 시행 초기 단계**에서부터 **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**하여 **제도 완성도**를 **높여**나갈 필요

2 진행 상황

□ **(경과)** ICT·산업융합·금융혁신 **세 분야**는 **규제특례 심의 가동** 중

○ **ICT·산업융합** 분야 : 1월 시행 후 **각각 2차례씩** 규제특례 **심의**

*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: (ICT융합) 2.14일, 3.6일 / (산업융합) 2.11일, 2.27일

○ **금융혁신** 분야 : 4.1일 시행 후 **2차례** 규제특례 **심의**(지정은 1차례)

* (4.8일) 심의 → (4.17일) 지정 / (4.22일) 심의 → (5.2일) 지정 예정

○ **지역혁신** 분야 : 4.17일 시행 후 **10개 시·도**에서 **특구계획 공고** 중

* 공고(30일) → 중기부에 신청(5월말) → 협의·조정(30~60일) → 심의·의결(7월말)

□ **(평가)** **규제 혁신**을 위한 **전기**(轉機) **마련**과 **분위기 조성**에 기여

○ **국회**의 **적극적 협조***, **기업·유관 기관**의 많은 **관심·참여**, **정부**의 **강한 의지**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**제도 연착륙**에 성공

* 규제 샌드박스 승인 1호 과제인 국회 앞마당 수소충전소 설치를 높게 평가

○ 다만,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**개선·보완** 의견도 꾸준히 **제기**

참고 1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

□ **(개념)** 기존 규제 불구, **신기술·신산업 시도**가 가능토록 **일정조건下**(시간·장소·규모)에서 **규제를 면제·유예**시켜 주는 **혁신의 실험장**

*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**모래 놀이터(sandbox)**에서 유래

□ **(주요내용)** **국민의 생명·안전 등 공익적 가치**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, **신기술·신산업 육성**을 위한 **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** 도입

① **규제특례 3종 세트 : 규제 신속확인❶, 임시허가❷, 실증특례❸** 도입

❶ 규제 존재 여부·내용 문의 →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

❷ 법령 모호·불합리 시 →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

❸ 법령 모호·불합리·금지 시 →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

<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>



② **안전 3종 세트 : 생명·안전 검토❶, 문제 즉시대응❷, 배상책임 강화❸**

❶ 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

❷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·예상 시 특례 취소

❸ 사전 책임보험 가입, 고의·과실 입증책임 전환(피해자 → 사업자)

Ⅱ. 시행 100일의 성과

1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「한국형 규제 샌드박스」 모델 창출

□ **(제도 내용)** 외국은 **실증특례 중심**이나, 우리는 규제 **신속확인·임시허가·실증특례** 등 **3종 세트 완비**

* 영국은 신속확인, 일본은 신속확인·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

□ **(적용 범위)** 외국은 **금융분야 중심이나,** 우리는 **ICT·산업융합·지역혁신** 등 **산업 전반을 포괄 → 가장 광범위**하게 시행 중

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

한국		외국
신속확인		해당 없음
임시허가	vs	해당 없음
실증특례		실증특례

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

국가	도입 범위
	·**실물경제 포함**하는 **4대 분야**
	·**금융 중심**, 최근 에너지 분야 확대
	·**금융 중심**, 최근 에너지 분야 검토
	·'18년 **실물경제 제한적 도입**(4건)

2 외국과 비교 시 「최단기간에 최다 적용」 사례 기록

□ **(심사 기간)** **6개월** 정도 소요되는 **외국**에 비해 **절반 수준**
(접수부터 심사까지 **통상 2~3개월** 내 완료)

□ **(승인 규모)** 외국 중 **가장 많은 영국**(年 40여건)에 비해 **2배 이상**

○ 시행 **한 달 내 첫 승인**을 시작으로 **현재까지 26건** 완료(☞ 참고2)

○ **4월말 부터 5월 초**까지 추가 **20여건 신속 심사** 예정

○ **금융혁신** 분야(4.1일 시행)와 **지역혁신** 분야(7월말) **본격 심사가 시작**될 경우 **금년 중 100여건 이상** 적용사례 창출 가능

한국과 주요국 심사 기간·승인 규모 비교

국가	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
	·**2~3개월**, **금년 중 100여건** 이상
	·통상 **6개월**, **年 40여건** 승인
	·'16년 도입 후 승인 **6건**
	·통상 **6개월**, '18년 후 승인 **4건**

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

승인건수	실적	5월초	6월
ICT 융합	8	4 (5월초)	5 내외
산업 융합	9	7 (4.29)	5 내외
금융 혁신	9	10 (5.2)	86 (심사)
지역 혁신	7월말부터 특구계획 심사		

3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

❶ 복합·덩어리 규제 → 일괄 규제유예·면제로 추진지연 해소

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(2.11일 승인)

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	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
■ **덩어리 규제** → 규제 개선 **논의 지연** ▸ 용도지역 규제(국토계획법·서울시 조례) ▸ 도시계획시설 규제(국토계획법) ▸ 공유재산임대 제한(공유재산법 등)	■ **관련 규제 유예·면제 → 우선 허용** ▸ 3곳 실증특례, 1곳 조건부 특례 부여 ■ 실증 결과 바탕으로 **신속한 규제정비** 추진

❷ 이해충돌로 교착상태 → 객관적 근거에 의한 생산적 논의 장 마련

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(2.11일 승인)

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	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
■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**역할 차별화** 논리로 **신기술 도입의 답보** 상태 지속 ▸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**질환 외 웰니스 항목 중심** 12가지로 제한(생명윤리법) ▸ 미·일·영 등 **주요국 보다 제한적** 운영	■ **13개 질환**에 대해 **실증 허용** ▸ 만성질환, 호발암, 노인성질환 등 포함 ■ **질병예측·건강관리 서비스 제공** 가능 ▸ 맞춤 식품,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**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·확대** 기대

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답보상태 → 시장에서 점검·보완 기회 확보

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(4.17일 승인)

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	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
■ **불법 현금융통**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**답보**(여신전문금융업법) ■ **계좌기반** 개인간 **송금서비스만 존재** → 지불·결제 **현실과 괴리*** *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·결제 수단	■ **부작용 최소화 조건*** 하에서 과감히 **허용** * 한도 설정,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■ 지불·결제 **편의성 획기적 제고** 기대 ▸ **계좌잔액 없이도** 일정한도 송금 **가능** ▸ **경조사·중고거래**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

4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도 유발

❶ 적극행정 창출 기회 제공

▪ 심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**유연한 법령해석** 등으로 **즉시 해결**

적극 행정 주요 사례

유연한 법령해석	▸약사법 해석에 따라 **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**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**허용토록 개선**(명확하게 공지) *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▸**한전**이 전력·에너지 신산업 분야 **중소기업 상품·서비스 중계**가 **가능**하도록 **한국전력공사법**을 유연하게 **해석**
정책 권고	▸**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** 의료용 **산소공급장치**를 **의약품·의료기기 복합 품목**으로 **신청**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

❷ 기업·소비자·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 창출

▪ **기업 : 산업간 융·복합** 제품, **기존 산업**에 **신기술 접목** 제품의 **출시**와 **실증**을 통해 혁신의 기회 확대

▪ **소비자 :** 신제품·서비스 조기 출시로 **선택권 확대, 편리성 향상**

▪ **정부 :** 실증결과 바탕으로 **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** 기회 확보

❸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동시에 완성

▪ 적극행정(3.14), 정부 입증책임제(3.27),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(4.18) 등 **유기적 연계·운영**이 가능한 **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** 마련

▪ **규제정비 방식, 사후관리** 및 **입법방식, 관련 공무원의 자세** 등 全 과정에서 **과거와 차별화**된 규제혁신 **시스템 완비**

【 승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 】

◇ **합법·불법**의 **불확실성 해소, 국내 판로 확보** 및 **해외 진출 기회 확대** 등을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

① A 기업

▸"태국, 베트남, 인도 등 **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** 국내 규제에 가로막혀 실제로 **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**"

▸"**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**할 수 있게 되었고, **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**할 수 있어"

▸"**규제 샌드박스를 계기**로 관련 규제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**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**"

② B 기업

▸"**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사업 활동과정에서 지난 2년간** 수주한 실적이 **40건에 불과**했던 것이 **단 3개월 만에 50건에 육박**"

▸"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**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**"

③ C 기업

▸"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**글로벌 기업보다 앞서서 2015년에 기술을 개발**했으나 **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** 인증을 받지 못해 **출시가 곤란**"

▸"**규제 샌드박스를 통해**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**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**될 것으로 기대"

④ D 기업

▸"제품개발 후 규제에 가로막혀 **규제완화를 위한 각종회의에 참석**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, **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어"**

▸"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**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**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, 관심있는 **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 진행** 중"

Ⅲ. 100일 경험을 통해 본 향후 과제

1. 현장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

□ **(경과) 제도**의 **완성도**를 높여 나가기 **위해** 시행 **초기 단계**에서부터 **다양한 채널**을 통해 **의견**을 **수렴**

○ **(정책 현장) 업계·협회, 신청·접수 전담기관** 및 **관계부처**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

* 전담기관 면담(2.15, 4.4), 협회 간담회(4.12), 관계 차관회의(3.5) 등

○ **(전문가 등) 언론**의 제기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, **국회**와 **민간 전문가**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

*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(2.20),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(4.3), 민간 전문가 간담회(3.28)

□ **(주요 제기 내용)** 신속하게 **개선이 필요한 과제**와 함께 **제도에 대한 인식공유 미흡**으로 제기되는 과제로 구분

① **제도 개선·보완이 필요한 과제 → 신속한 정비 추진**

❖ **신청·접수 단계**

▸ "법률 자문, 서류 작성 등 **신청절차**가 복잡"

▸ "**명백하게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풀어야** 하는데, 규제 샌드박스에 공을 넘겨 **규제 개선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제도로 운영**되어서는 **곤란**"

❖ **과제 심사 단계**

▸ "규제 샌드박스 성과는 **승인건수 보다 실질적 승인내용**이 **중요**"

▸ "**동일·유사 신청 과제**의 경우에는 **심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**할 필요"

❖ **사후 관리 단계**

▸ "실증특례가 **실제 규제 개선**으로 미연결시 **단순 시범사업**으로 전락 우려"

▸ "**실증특례·규제 정비 기간이 길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빼앗길** 우려"

② **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공유 미흡 → 적극적인 설명·안내**

▸ "**부처별 칸막이식 신청·접수**는 불편 초래"

▸ "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**정부 내 컨트롤 타워 부재**"

▸ "**과제별 건건이 심사**로는 체감도 제고에 역부족"

2.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

◇ 규제 샌드박스의 **궁극적 목적**이 규제로 가로막힌 **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**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한 **개선방향 설정**

중점개선방향

❶ **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·신기술 규제**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「규제 관계차관회의」 등을 통해 **신속하게 정비**

❷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**분기별 사후 점검체계**를 **가동**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**즉시 규제정비**를 통해 **시장출시 지원**

운영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

[1] 신청·접수 단계 : 「안내자 역할 강화」 + 「규제 정비체계 보완」

全 과정 안내자 역할 강화

□ **(현황)** 사전 상담·안내 등을 위해 **전담 위탁기관**❶을 **지정·운영 중**이나 現 지원체계로는 **친절한 안내자 역할**❷ **제공**에 **한계**

❶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산업기술진흥원, 핀테크지원센터 등
❷ 상담, **법률 자문**, **기술 해석**, **신청서 작성 지원**, 분과위·심의위 자료작성 지원 등

□ **(개선)** 규제 샌드박스 **전담 지원기능**을 **대폭 보강**

○ **추가 예산 확보**(추경)로 **법률 자문·신청서 작성 지원** 등 **강화**

○ 4개 부처·전담기관 **조직·인력 확충**으로 **현장수요 적극 대응**(4~5월)

모든 신청과제의 처리체계 구축

□ **(현황)**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**다양한 유형의 과제**도 **신청**되고 있으나, 이를 **적절히 처리**할 수 있는 **검토체계 미비**

* △신산업·신기술과 무관, △즉시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신산업·신기술 규제 등

□ **(개선)** 신청과제 **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**를 **구축**

① **규제 샌드박스 대상**: **대안이 없는 경우**로 **한정**하여 전향적 운영

② **신산업·신기술과 무관**: **기존 규제개선 기구**로 **이관·처리** 의무화

③ **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·신기술 규제**: **규제 샌드박스 절차**를 **거치지 않고** 별도의 정비체계*에서 **신속하게 정비**

*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+ 국무조정실장 주재「규제 관계차관회의」

[2] 과제 심사 단계 : 「혁신의 실험장」이 되도록 개선

부가조건의 최소화

□ **(현황)** **일부 엄격한 조건 부가**로 실증 테스트 취지 약화 우려

□ **(개선)** **부가 조건**을 **최소화**하고 **수시 정비** 체계를 도입

○ 해당 **규제부처**에 조건 필요성, 해외 사례 등 **입증 책임** 부여

○ **전문 분과위**에서 **부가 조건 적절성**을 **수시 점검**해서 **완화** 추진

동일·유사 사례는 절차 간소화 및 신속처리

□ **(현황)** **동일·유사 신청사례**에 대한 **표준화된 처리방침**이 **불분명**하여 효율적 심사 및 부처간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애로

□ **(개선)** **신청기업**과 **제품·서비스 유형**에 따라 **핵심 고려 요소*** 중 **일부**는 관계부처 **협의·심의**를 **생략**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

* 협의·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: △관련 규제, △기업 역량, △추가·변경 사항 등

핵심 고려요소별 협의·심의 여부

구분	관련규제	기업역량	추가·변경사항	예시
동일기업 & 동일제품·서비스	×	×	○	▸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(2.11일 서울 내 4곳, 실증특례 승인)
타 기업 & 동일제품·서비스	×	○	×	▸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개 항목 (마크로젠, 13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)
동일기업 & 유사제품·서비스	△ (일부 제외)	×	○	▸마크로젠, DTC 13개 항목 외 추가

[3] 사후 관리 단계 : 「실질적 규제 개선」으로 성과 확산

신속한 규제정비로 시장출시 조기화

□ **(현황)** **실증특례 기간**(2+2년) **중** 적극적 **규제 개선 미흡 우려**

□ **(개선)** **분기별**로 **실증특례**를 **점검**하여, **규제개선 필요성 검토**

* 「2+2년」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대 한도 → 정부는 2년 내 규제정비가 원칙

○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**분기별 「실증특례 점검 보고서」**를 작성하고, **「규제 관계차관회의**(국무조정실장)*」에서 **심사**

* 시행 초기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되, 제도 안착 시 심사체계는 추후 검토

○ 규제 정비 필요성 인정 시 **실증특례 기간 중**이라도 **규제정비 추진**

신규 기술기준 조속 마련 지원

□ **(현황)** **실증특례 종료 후 관련 신규 기술기준 마련** 작업에 **착수**할 경우 제품·서비스의 **시장 출시**가 **크게 지연**될 우려

□ **(개선)** 실증특례 기간 중 **기술 전문기관**(예 : 국가기술표준원)을 통해 **신규 기술기준 마련*** 병행 추진

* 금년에는 기존 예산 전용·추경예산 반영 통해 지원하고, 내년 예산 본격 확보 추진

참여 기업의 기술·재정 지원 확대

□ **(현황)**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이 **규제특례 외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**한 경우 지원체계 미비

* 現 지원 내용 : ❶ 시제품 제작, 시험·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 당 최대 1.2억원
❷ 책임보험료 50%, 최대 1,500만원 지원

□ **(개선)** 규제 샌드박스 **승인 과제**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 **R&D 지원*** 및 **벤처·중소기업 지원** 등 **기타 정책수단**과도 **적극 연계**

* 공모방식의 현 R&D 지원 체계상 금년 중 지원은 곤란하여 내년 예산 확보 추진

3.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

◇ **제도의 올바른 이해**를 위한 적극적인 **설명과 안내 노력 병행**

1 부처별 칸막이식 신청·접수

□ **기업**은 **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·문의**❶할 수 있으며, 이후 **분야별 자세한 안내**❷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

❶ ICT융합(과기부), 산업융합(산업부), 금융혁신(금융위), 지역혁신(시·도, 중기부)
❷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

□ 다만, **법률 자문·컨설팅, 체계적인 사후관리**를 위해서는 **분야별 전문성**이 **중요**하므로 **4대 분야로 구분·접수**

2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부재

□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**국무조정실**을 **컨트롤 타워**로 **협업체계** 완비

○ **(국무조정실)** 규제 샌드박스 **제도 총괄**

* 규제 관계차관회의(국조실장 주재),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(규제조정실장 주재)

○ **(4법 주관부처) 4개 분야별**(과기정통부·산업부·중기부·금융위) 규제 샌드박스 **운영 총괄**, 해당 **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·평가**

○ **(규제 부처*) 규제 특례 협의, 사후 관리** 및 **규제 정비 추진**

*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·집행하는 부처

3 부처별 건건이 심사로는 역부족

□ **규제특례**는 신청에 기반한 **예외적 조치**로서 건별로 **면밀한 심사** 필요

○ **영국·일본** 등 주요 선진국도 **건별 심사체계**이며, **한국**의 규제 샌드박스가 **훨씬 신속하게 심사·적용 중**(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)

❶ (영국)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/ 年 140여건 접수, 45건 내외 승인
❷ (일본) '18.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·승인

□ 특히, **사후에 규제가 정비**될 경우 **업계·산업 전반이 혜택**을 향유

참고 2 26개 승인과제 개요

신청기업	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
현대차	▪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⇒ (실증특례)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규제 유예·면제로 설치 허용
마크로젠	▪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
제이지 인더스트리㈜	▪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⇒ (실증특례) 버스외부에 전광류 패널 부착 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
㈜ 차지인	▪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⇒ (임시허가)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
한국전력공사	▪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⇒ (실증특례) 비식별 에너지 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에도 활용 인정
㈜ 알에스 케어서비스	▪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⇒ (실증특례)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
㈜ 엔에프	▪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⇒ (적극행정) 의약품·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→ 보험수가 적용
한국전력공사	▪ 전력·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⇒ (적극행정)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
㈜ 정랩 코스메틱	▪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⇒ (적극행정) 화장품 기준을 旣 충족하여 관련 규제가 없음을 확인
KT	▪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⇒ (임시허가)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
카카오페이	▪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⇒ (임시허가)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
휴이노	▪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 불구 예외 인정

신청기업	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
올리브헬스케어	▪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⇒ (적극행정)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
스타코프	▪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⇒ (임시허가) 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
VRisVR	▪ 이동형 VR트럭 ⇒ (실증특례) 차량변경 기준 부재, 영업장 주소·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
조인스오토	▪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·알선 예외 인정
블락스톤	▪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⇒ (실증특례) 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 인정
디렉셔널&신한금융투자	▪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
국민은행	▪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·통신 융합 ⇒ (실증특례)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
NH농협손해보험	▪ On-Off 해외여행자 보험 ⇒ (실증특례)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·확인 의무 불구 예외 인정
레이니스트	▪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⇒ (실증특례)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·확인 의무 불구 예외 인정
신한카드	▪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
페이플	▪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
㈜루트에너지	▪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⇒ (실증특례)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투자 등에 예외 인정
신한카드	▪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물품 판매·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
BC 카드	▪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⇒ (실증특례)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